

●법무부령 제1128호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0월 01일

법무부장관 인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”을 “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 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 단서 중 “해당검찰청”을 “해당 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2항 중 “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해당검찰청”을 “해당 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관할검찰청”을 “관할 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”을 “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”으로, “고등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2조 본문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25조 중 “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 공소청”으로, “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관할 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검찰청에서 작성한”을 “공소청에서 작성한”으로, “해당검찰청”을 “해당 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검찰청별”을 “공소청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”으로, “상급검찰청”을 “상급 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5조 본문 중 “각급 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검찰청의 장을”을 “공소청의 장을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표의 문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문 서 명 | 소송종류 | 광공·지공 | 공 소 청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고(지)검”을 “광(지)공”으로, “고 검”을 “광 공”으로, “대 검”을 “공 소 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고(지)검”을 “광(지)공”으로, “고검”을 “광공”으로, “대검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고(지)검”을 “광(지)공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(검찰사건번호)”를 각각 “(공소청사건번호)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고(지)검”을 “광(지)공”으로, “고검”을 “광공”으로, “대검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4호의3서식 앞면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사건번호란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5호의2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“대검사건번호”를 “공소청사건번호”로, “고(지)검사건번호”를 각각 “광(지)공사건번호”로, “대검사건”을 “공소청사건”으로, “고(지)검사건”을 “광(지)공사건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5호의4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, “대검”을 “공 소 청”으로, “고검 또는 지검”을 “광공 또는 지공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 뒷면 중 “각급 고·지검”을 “광·지공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9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”을 “○○공소청”으로,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·직무 범위·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지방검찰청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무부 제공>